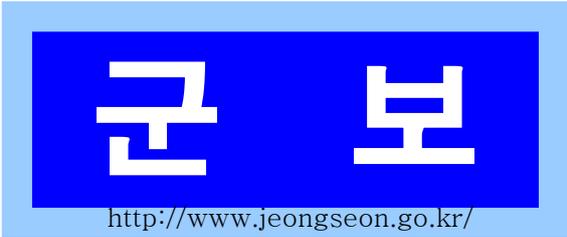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2호 2008. 6. 18 (수)

## 【조 례】

- 조례제2121호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3
- 조례제2122호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5
- 조례제2123호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12
- 조례제2124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4
- 조례제2125호 정선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18
- 조례제2126호 정선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19

## 【훈 령】

- 훈령제367호 정선군보발간규정 일부개정규정.....20

## 【고 시】

- 고시제2008-36호 하천점용허가고시.....21
- 고시제2008-37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22
- 고시제2008-3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고시.....23
- 고시제2008-39호 하천점용허가고시.....24
- 고시제2008-41호 200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5
- 고시제2008-42호 하천점용허가고시.....26

## 【공 고】

- 공고제2008-325호 '08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27
- 공고제2008-332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28
- 공고제2008-335호 소하천점용·사용 허가공고.....29
- 공고제2008-338호 2008년 5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30
- 공고제2008-339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32
- 공고제2008-35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33
- 공고제2008-352호 정선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82
- 공고제2008-353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84
-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08-4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결산 공고.....8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6 . 16.

정선군조례 제 2121 호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상징물조례”를 “정선군 상징물조례”로 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군화 : 동강할미꽃(별표5)
- 6. 군목 : 생강(동박)나무(별표5)
- 7. 군조 : 황조롱이(별표5)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5]



## 1. 군 화 : 동강할미꽃

거친 자연환경 등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함을 잃지 않는 정선인의 굳은 의지와  
 미래를 향한 열정을 나타냄.



## 2. 군 목 : 생강(동박)나무

이른 봄이면 주변 산과 계곡에서 쉽게 접하는  
 친숙함과 화려하지 않지만 계절마다 그 색깔  
 을 달리하는 다채로움이 정선군민의 순수함과  
 생동감을 상징



## 3. 군 조 : 황조롱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정선의 청정함과 신비로움을 상징

## 가. 개정이유

지난 78년 내무부(現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정된 군화, 군목, 군조를 정선의 특색  
 과 색깔을 반영하고, 문화·생태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물로 변경하여 문화마  
 케팅에 활용하고 브랜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 기존 상징물(군화, 군목, 군조) 변경(제3조)

- 군 화 : 칠 쪽 → 동강할미꽃
- 군 목 : 잣나무 → 생강(동박)나무
- 군 조 : 비둘기 → 황조롱이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6. 16.

정선군조례 제 2122 호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회의 설치·운영)** ①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그 소속하에 정선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계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2. 1인의 군의회 의원
3. 4인 이내의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회의 기능)** 협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협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①협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실적)** ①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 본문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 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교육훈련)** ①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 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친환경상품 생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①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사업) ①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①군수는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군수,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군수,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도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가. 제안이유

-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이 제정(2004.12.31)되어 2005.07.0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제4조)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군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등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제5조)
  - 정선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구성 운영
-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촉진(제10조)
  -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시책 추진
  -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교육·홍보 및 사업자 지원 등
-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11조, 제12조)
  -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및 구매계획 공표 및 제출
-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 및 구매예외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제14조)
  - 의무구매범위를 정함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 용역 및 건설공사 등 계약시
  - 구매예외 규정을 둠으로서 물품을 탄력적 구입
    - 일반상품과 가격대비 고가, 구입기간 장기소요, 긴급 물품 구입시, 친환경상품 품질저하 등 사유시
- 교육훈련 실시(제15조)
  - 년1회 이상 교육을 실시
    - 필요시 환경부장관, 친환경상품진흥원등에 지원 요청 등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제16조, 제17조)
  -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기술개발업체 지원 등
- 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제19조)
  - 관내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요청 및 행정지원
-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 실시로 구매촉진 활성화 (제21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6. 16.

정선군조례 제 2123 호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정선군 자연환경보전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을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④ 제1항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영 제42조제1항”을 “영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법 제45조”를 “법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법 제59조제1항”을 “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 개정이유

-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관련 조항 및 내용이 불부합 되기에 근거조문 개정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함

##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동 조례 제3조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을“제34조제3항”으로,
  - 동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을“제39조제1항”으로,
  - 동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 중 “영 제42조제1항”을 “영 제34조 제1항”으로,
  - 동 조례 제15조제2항 중 “법 제45조”를 “법 제40조”로,
  - 동 조례 제19조제1항 제6호 중“법 제59조제1항”을 “법 제58조제1항”으로 정비
-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 ④ 제1항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6. 16.

정선군조례 제 2124 호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인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과 가치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①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정선아리랑 전승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선아리랑 보존·전승활동 지원 사업
2. 정선아리랑 관련 연구·개발 사업
3. 정선아리랑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정선아리랑 정보구축 및 관리사업
5. 정선아리랑 관련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6. 기타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재원조성 등)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군수
2. 정선군의회 추천의원 1인
3. 정선문화원장
4. 군 예산 및 재단업무 담당 실·과장

③선임직 이사는 교육계, 군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0조(이사회)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회의무를 통할한다.

④이사회회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2조(사업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업무계획 등) ①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3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매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고·검사·감사) ①군수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시 재단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개정이유

-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진흥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제1조~제3조 : 재단 설립의 목적 및 설립방법 규정
- 제4조~제6조 : 재원조성 방법 및 사업 규정
- 제7조~제10조 : 임원의 역할 및 이사회 구성방법 규정
- 제11조~제18조 : 업무계획 및 보고, 감사에 대한 규정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6. 16.

정선군조례 제 2125 호

정선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

정선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폐지이유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과 전문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훈련원설치 관련 조례로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농업인 단체의 명칭변경, 교육방법 등에 현실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임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6. 16.

정선군조례 제 2126 호

정선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

정선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폐지이유

- 정선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등에 대한 실비변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와 관련 없이도 지급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임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

정선군보발간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6월 5일

정선군훈령 제 367 호

정선군보발간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보발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발간시기) 군보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월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간사항이 없을 시에는 발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가 발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

제5조 중 “매월 20일까지”를 “발간일로부터 5일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발간시기) <u>군보의 발간시기는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시기로 한다.</u>	제3조(발간시기) <u>군보의 발간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에 월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간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발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가 발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u>
제5조(원고제출) 군보게재 원고는 <u>매월 20일까지</u> 발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제출)----- <u>발간일로부터 5일전까지</u> -----.

정선군고시 제2008-36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2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표자		주소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번지
하 천 명		임계천(지방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753-1번지의 3필지 일원		
	면 적	A=463m <sup>2</sup> V=35m <sup>3</sup>	폐천 부지 예상 면적	‘없 음’
	기 간	2008년 05월 22일 ~ 2008년. 08월 30일		
	목 적 및 사 유	임계배수지 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		
※ 설계도서 : 별도보관				

정선군고시 제2008-37호

##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5월 26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박 낙 운	주 소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32번지
하 천 명		송현천(지방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1048-4하천, 1048-15하천		
	허가량	A=222㎡ A=917㎡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5월 26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농경지(전)		

정선군고시 제2008-3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고시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5월 26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합 형 근	주 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12-11번지
하 천 명		-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527-1번지		
	허가량	A=36m <sup>2</sup>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5월 01일 ~ 2008년 05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입목 반출도로		

정선군고시 제2008-39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5월 26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정선군수(산업경제과장)		
	대표자		주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하 천 명		석항천(지방2급)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423번지 일원		
	면 적	A=2,776m <sup>2</sup> V=5,490m <sup>3</sup>	폐천 부지 예상 면적	‘없 음’
	기 간	2008년 05월 23일 ~ 2008년 12월 31일		
	목 적 사 율	신동대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성토를 위한 토석채취		
※ 설계도서 : 별도보관				

정선군고시 제2008-41호

200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 하여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8. 5. 31.

정 선 군 수

1. 2008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8년 1월 1일 기준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 : 113,800필지

다. 공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sup>2</sup>)당 가격(원)(필지별 내역 “별첨” )

라. 공시방법 : 고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가. 기 간 : 2008. 6. 1 ~ 2008. 6. 30(30일간)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가격을 제시하여 제출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33-560-2256, 2267, 2455 E-mail : mun0919@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고시 제2008-42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6월 03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정선군수(관광문화과장)		
	대표자		주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하 천 명		한강(지방1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27번지선(919천) 일원		
	면 적	A=7,441m <sup>2</sup> V=2,543m <sup>3</sup>	폐천 부지 예상 면적	‘없 음’
	기 간	2008년 05월 31일 ~ 2008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율	정선군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토석채취		
※ 설계도서 : 별도보관				

정선군공고 제2008-325호

## '08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08년 사방사업(사방댐설치)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정 선 군 수

1. 사업명 : 2008년 사방사업(사방댐설치)

2. 사업내용 및 토지사용통지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사용기간	사용목적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재채취수량 및 사용면적		
					주소	성명	구분	종류	수량 및 면적
정선군 동면 화암리 산134-5번지	임	480	'08.5.19~ '08.9.15	'08년도 사방사업 (사방댐) 시행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2	이도윤	사용면적	사방댐	0.001ha

3.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4.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환경산림과(☎56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8-332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05월 30일

정 선 군 수

1.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내역 참조”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08년 06월 29일 이후
3. 보관 및 강제폐차 장소 : 관허폐차장
4. 공 고 기 간 : 2008년 05월 30일 ~ 2008년 06월 28일(30일)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벌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8-335호

소하천점용·사용 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7조제4항(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6월 10일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SK네트웍스		
	대표자	정만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4번지
소하천명		직원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71번지(527-9번지선)		
	면적	1m <sup>2</sup>	폐천부지예상면적	“없음”
	기간	2008년 06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목적 및 사유	이동통신 전주(통신주) 설치		

정선군공고 제2008-338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강미영 등 17명 (내역별첨)

주소또는거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1-1 305호 (2/2) 등 17개소

서류의 명칭 : 취득세·면허세·자동차세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08년 5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위의 서류를 2008년 5월중 귀하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독촉납기를 2008년 7월 7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 2008년 5월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서

세 목	현주소	납세자명	과세물건	세액합계	공고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취득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1-1 305호 (2통2반)	강미영	토지 정선읍 용탄리 279번지의 1필지 10896.0000㎡ 매매	796,650	수령인없음	20080609	20080707
취득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6-11 4층 402호 (8통6반)	이원국	토지 사북읍 직전리 317번지의 4필지 27577.0000㎡ 매매	13,920,080	수령인없음	20080609	20080707
취득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5 장원빌딩 502호	코랜리얼티	토지 사북읍 직전리 산 221-5번지 1653.0000㎡ 매매	104,49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취득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656 한서아트빌 101호 (15통3반)	박춘화	토지 사북읍 직전리 177-1번지 7965.0000㎡ 매매	2,511,13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취득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2동 110호 (1통11반)	김아현	건물 사북읍 사북리 229-3번지 2동 110호 건물 40㎡ 경락공매	143,26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취득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아파트 104동 401호 (2통14반)	전영복	건물 사북읍 사북리 302번지 104동 401호 건물 59.97㎡ 매매	617,66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취득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38 주공아파트 216동 503호 (6통2반)	황정원	토지 신동읍 방제리 119-1번지의 2필지 31314.0000㎡ 매매	2,828,98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취득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유니온오피스텔 403호 (32통6반)	이종석	토지 동면 북동리 산 107번지 29157.0000㎡ 매매	1,857,92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취득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84-18 (19통3반)	김태분	토지 동면 화암리 110번지의 3필지 2149.0000㎡ 매매	2,283,030	수령인없음	20080609	20080707
취득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5-3 (5통5반)	김진수	801101 2007년식 승용 투싼 신규(축)	394,940	수령인없음	20080609	20080707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새터건설	고한리36번지의7필지	3,09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새터건설	고한리36번지의7필지	3,09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3동 406호 (1통12반)	최성열	스타전당사	18,54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35-3 (4통2반)	박혜수	운치리 산10-8 2층 주택	6,180	이사감	20080609	20080707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58-8 (14통4반)	최영수	51노2248(비영업용,배기량:999)[감면율:상반기15%,하반기15%]	19,97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90-1 아파트 3동 501호 (5통5반)	이세만	77더4028(비영업용,승차정원:5)	15,54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35-2	주원개발	강원28노1112(비영업용,배기량:1498)[감면율:상반기50%,하반기50%]	30,840	수취인미거주	20080609	20080707

## 정선군공고 제2008-339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6. 09.

## 정 선 군 수

- 1.제 목 :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공고기간 : 2008.06.09~ 2008.06.23(14일간)
- 3.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채납세목	채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안영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1-4 오류동취버스 아파트 207(5통14반)	재산세외 5건	215,430	부동산	수취인부재
김순득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270-1(1통6반)	주민세(종합소득)외 3건	460,390	부동산	수취인부재
남관수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무릉주공아파트 107동 104호(1통7반)	재산세(주택)외 4건	117,090	부동산	수취인미거주
김말영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동리 2-3 (8통)	재산세 (건축물)외5	223,110	부동산	이사감
강두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37(12통5반)	재산세(주택)외 2건	156,930	부동산	수취인부재
이명희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80 (6통1반)	재산세외 6건	114,500	부동산	수취인부재
허남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7-35 (9통7반)	주민세(양도소득)외 4	127,800	부동산	수취인부재
나종수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2-18 (9통8반)	재산세(건축물)외4	189,700	부동산	수취인부재
안양자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남문로2가 73-4(3/3)	재산세(토지)외 2건	139,480	부동산	폐문부재
김문순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316 (3반)	재산세(토지)외 3건	100,490	부동산	수취인미거주
김우봉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33 (14통1반)	재산세 (토지)외 2	214,460	부동산	수취인부재
신정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20 (3통6반)	재산세(주택)외 2건	109,270	부동산	수취인부재
박영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73-49 (17통3반)	종합토지세의 4건	110,390	부동산	수취인부재
고광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19-35(10통6반)	재산세(토지)외5건	448,020	부동산	수취인부재

## 4.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재무과(033-560-2292)로 연락바라며,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선군공고 제2008-351호

##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정 선 군 수

##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개정취지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및 국가제도 개선 사항을 수용·반영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폐지(안 제9조 제1호)

나.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퇴직 후 30일 이내 재임용되는 조건을 삭제(안 제24조 제2항)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 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경력을 산입

다.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안 제25조)

라.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안 별표1의2)

마. 직군·직렬 개편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을 변경하고,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추가하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등 변경(별표2 내지 별표7, 별표7의4, 별표9, 별표11, 별표12)

바. 계약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을 명시(안 별표13)

- 계약직 가급 내지 마급 공무원을 5급 내지 9급 상당계급으로 명시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제3호중 “인정하는 공무원”을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의2·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7의4·별표9·별표11·별표12·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95.12.19, 96.3.26, 98.2.20, 04.10.13>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9조 및 제14조제5항관련)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성 유		성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 공 화 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자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수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비 고 : 윗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개정 96.3.26, 04.10.13>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9조 관련)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류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생활지도	생 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비 고 : 1. 윗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 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윗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별표4] <개정 94.12.19, 95.3.22, 95.7.4, 96.3.26, 99.4.16, 04.10.13, 05.3.2, 06.2.15>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 2. 15>

[별표 5] <개정 94.12.19, 95.3.22, 95.12.28, 96.11.18, 98.2.20, 99.7.1, 04.10.12, 05.3.2>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임용예정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기능사

#### 나. 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를 비교하여 상호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 (2) 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 다. 기타요건

-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 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 3급 : 8년이상
  - 4급 : 4년이상
-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6)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2.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사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계급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산질병관리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 의사(2) 치과 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 의사(2)				
	치 무		치과 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수의사 약사 위생사(5)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 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 기	전 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선 박	선 박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년)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오물처리사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 오물처리사 1급 오물처리사 2급(2)
사무보조	워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별표 6] <개정 94.1.10, 94.12.19, 96.2.26, 98.2.20, 99.4.16, 04.10.1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제도,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기사(방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화학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u>약사(7)</u>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u>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u> ) <u>약사</u>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u>약사(7)</u>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u>약사, 위생사(5)</u>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u>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u>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농화학) <u>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u>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u>유기농업</u> )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u>비철야금비 파괴검사</u> ,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u>건설 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u>케도장비정비</u>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 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u>기계설비,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 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u> )
복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u>산림</u> , 임업종묘, 식물 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u>농림토양평가 관리</u> )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 학, <u>해양생산관리</u> , 수산 양식, 어로)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u>어병</u> , 수질환경, <u>생명공 학</u> )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u>해양생산관리</u> ,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 <u>수산제조</u> , 식품)	기사( <u>수산제조</u> ,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u>광해방지, 인간공학</u>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u>전문 간호사(7)</u>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u>광해방지, 인간공학</u>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 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 (5), <u>영양사(5)</u>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 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 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 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u>지질 및 지반</u> , 폐기물처리, <u>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u> ) 의사(2), 약사(7), 수의사(7),	기사(공업화학, 조경, <u>산림, 식물보호</u> ,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u>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u> )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u>교통, 광해방지</u>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u>광해 방지</u> )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 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 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 안전, 소방설비)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  
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  
격증은 특별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u>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u> )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u>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u> )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사,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u>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u> )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u>유기농업</u> )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u>승강기</u> )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생활지도	생 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u>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u> )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u>수산질병관리사(7)</u>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u>수산질병관리사</u>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개정 94.12.19, 95.7.4, 96.3.26, 99.12.3, 04.10.13>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u>행정</u>	<u>운수</u>			<u>산업기사(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u>
<u>사회복지</u>	<u>사회복지</u>	<u>사회복지사 1급</u>	<u>사회복지사 2급</u>	<u>사회복지사 3급</u>
<u>전산</u>	<u>전산</u>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u>사서</u>	<u>사서</u>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3급 정사서
<u>공업</u>	<u>일반기계</u>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u>궤도장비정비</u> ,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u>품질경영, 승강기</u> )	산업기사( <u>컴퓨터응용가공</u> ,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u>궤도장비정비</u> ,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u>품질경영, 승강기</u> )
	<u>기계운전</u>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 <u>컴퓨터응용가공</u> ,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공 업	기계운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u>궤도장비정비</u> ,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u>궤도장비정비</u> ,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u>판금제관</u> , 배관설비, 산업안전, <u>교통</u>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u>품질경영</u> ,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 <u>메카트로닉스</u> ,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품질경영</u> )	산업기사( <u>메카트로닉스</u> ,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u>품질경영</u> )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야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u>품질경영</u>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u>품질경영</u> )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u>섬유공정</u> ,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 <u>섬유물리</u> , <u>섬유화학</u> , 의류, 산업안전, <u>품질경영</u> )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 <u>섬유물리</u> , <u>섬유화학</u> , <u>섬유디자인</u> , <u>패션디자인</u> , <u>패션머천다이징</u> , 산업안전, <u>품질경영</u> )						
	일반화공	기술사( <u>화공</u> , 세라믹, 화공안전, <u>가스</u> ,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 <u>화약류제조</u> , 화공, 산업안전, <u>가스</u> , <u>품질경영</u> , 식품)	산업기사( <u>화공</u> , <u>화약류제조</u> ,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u>품질경영</u> , 식품)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 <u>자원관리</u> , 화약류관리, 해양, <u>지질및지반</u> , <u>광해방지</u> )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u>광해방지</u>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u>유기농업</u> , <u>화훼장식</u>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u>농림토양평가관리</u> , 식품, <u>유기농업</u> )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u>식물검역</u>	기술사( <u>조경</u> , <u>종자</u> , <u>산림</u> , <u>농화학</u> )	기사( <u>종자</u>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u>산림</u> , 생물공학, <u>유기농업</u> )	산업기사( <u>종자</u> , 시설원예, 식물보호, <u>농림토양평가관리</u> , <u>산림</u> , <u>유기농업</u> )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기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 <u>종자</u> , <u>산림</u> ,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 <u>산림</u> , 임업종묘, 농화학, <u>식물보호</u> , <u>농림토양평가관리</u> )	산업기사( <u>산림</u> , 임업종묘, <u>식물보호</u> , <u>농림토양평가관리</u> )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 <u>산림</u> ,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계급		
직렬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녹 지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환경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u>한약사</u> , 수의사, <u>전문간호사</u>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u>광해방지</u> , <u>인간공학</u> )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u>응급구조사2급</u>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u>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u> )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u>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u> ) 위생사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u>자연생태복원</u> )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u>산림</u> ,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u>광해방지</u> )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u>광해방지</u> ),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 <u>산림</u> , 대기관리, 소음진동, <u>지질및지반, 기상예보</u> )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u>응용지질</u> )	산업기사( <u>산림</u> ,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u>토양환경, 광해방지</u> )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u>토양환경, 광해방지</u> )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u>지질및지반</u> )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u>응용지질</u>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u>교통</u> )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u>지질및지반</u> , 건설안전, 교통, <u>광해방지</u>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u>교통</u> , <u>응용지질</u> , <u>광해방지</u>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u>콘크리트</u> , <u>철도보선</u>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u>교통</u> )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u>지질및지반</u> ,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u>응용지질</u> ,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교통시설			
	도시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u>응용지반</u>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u>응용지반</u>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u>교통</u> )
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비 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교환	교환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계	기계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립,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직렬	계급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직계	직류		
기계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난방	난방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선박	선박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원예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위생	위생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북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사무 보조	워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계리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준사서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 비 고 :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4] &lt;신설95.7.4, 개정 96.3.26, 98.2.20, 99.4.16, 04.10.12, 05.3.2&gt;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물류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차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p>공 업</p>		<p>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p>기계운전</p>	<p>기술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p> <p>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조 선</p>	<p>기술사 : 조선</p> <p>기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p>일반전기</p>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p>	

공 업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기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 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 종사, 핵연료 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성 유	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p>공 업</p>	<p>자 원</p>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p>	
<p>농 업</p>	<p>일반농업</p>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                  사</p>
	<p>잠 업</p>	<p>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p>식물검역</p>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p>농 화 학</p>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p>축 산</p>	<p>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p>
	<p>생명유전</p>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 자격증 가                  산 비율적용 : 방                  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사                  선취급감독자</p>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u>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u>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u>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u>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u>산림, 임산가공</u>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u>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u> <u>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u> <u>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u> <u>기능사 : 조경, 산림</u>	
해양수산	일반해양	<u>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u> <u>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u> <u>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u> <u>기능사 : 잠수</u>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수 산 물 검 사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해양수산	어 로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p>기능사 : 어로</p>	
	해양교통 시 설	<p>기술사 : <u>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p> <p>기능장 : <u>전기, 전자기기</u></p> <p>기사 : <u>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u></p> <p>산업기사 : <u>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u></p> <p>기능사 : <u>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u></p>	
보 건	보 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의료기술	의료기술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임 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료 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학,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 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의 사, 약사, 수의 사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
	수 질	기능장 : 산림 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 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대 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술사 : 화학,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학,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학,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시 설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0이전 취득)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	
	전자	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공업연구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p>	
	섬유	<p>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p> <p>기능장 : 염색</p> <p>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p> <p>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화학	<p>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p> <p>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p>	
	물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p>	
농업연구	작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업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벼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농업연구	농업환경	<p>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p> <p>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p>	
	잠업근총	<p>기술사 : 생사</p> <p>기사 : 생물공학</p> <p>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벼짓중군,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농업연구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촌생활	<p>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p>
생활지도	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p>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p>
	농촌사회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p>
농업연구	농공	<p>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아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특수취급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 경	기능장 : 산림	
농촌지도	임 업	기사 : 조경, 종자, <u>산림</u> ,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능사 : 축산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p>보건연구</p>	<p>공중보건</p>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직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p>
<p>환경연구</p>	<p>환 경</p>	<p>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p>
<p>환경연구</p>	<p>환 경</p>	<p>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시설연구</p>	<p>토 목</p>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p>농촌지도</p>	<p>농업토목</p>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환경연구	환 경	<p>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설연구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9] &lt;개정 96.3.26&gt;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 1. 연구직 및 지도직외의 기술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해양
	일반수산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축 지	토목(토목건설)
통 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계통(수의학포함)
생 활 지 도	식품가공, 농가정,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주생활
어 촌 지 도	수산, 해양

[별표 11] <개정 96.3.26, 98.2.20>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3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u>일 반 기 계</u>	
			<u>농 업 기 계</u>	
	전 기		<u>기 계 운 전</u>	
			<u>일 반 전 기</u>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야 금	
	성 유		성 유	
화 공	화 공			
화 학	-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u>농 업 환 경</u>	농 업	<u>일 반 농 업</u>	
			<u>농 화 학</u>	
	<u>작 물 보 호</u>	농 업	<u>일 반 농 업</u>	
			<u>식 물 검 역</u>	
	농 업 경 영	농 업	농 업	
			농 촌 지 도	
	<u>장 업 권 총</u>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경 영	
	원 예	농 업	장 업	
			장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 촌 지 도	농 촌 지 도	농 업	
			원 예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 명 유 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 촌 생 활	농 촌 지 도	일 반 농 업
			농 촌 사 회
			생 활 지 도
	축 산	농 촌 지 도	축 산
			축 산
	농 공	농 촌 지 도	농 업 기 계
			농 업 토 목
			농 업 토 목
녹지연구	임 조 경	임 업	
		전 직 류	
수의연구	수 의	농 촌 지 도	
		임 업	
해양수산연구	해 양 환 경	수 의	
		수 질	
		일 반 수 산	
	수 산 자 원	어 촌 지 도	어 촌
			일 반 수 산
	수 산 양 식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중 식
	수 산 공 학	어 촌 지 도	어 촌
			로 촌
	수 산 가 공	어 촌 지 도	수 산 제 조
수 산 물 검 사			
수 산 경 제	어 촌 지 도	어 촌	
		일 반 수 산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 반 의 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약 제
공 중 보 건	보 건	보 건	
		식 품 위 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일 반 토 목
			농 업 토 목
	건 축		건 축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령	직 류	직 령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전	농 업	<u>일 반 농 업</u>
		농 업 연 구	<u>작 물</u>
			<u>작 물 보 호</u>
			<u>농 업 환 경</u>
			<u>농 업 경 영</u>
	<u>원 예</u>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농 지	전 직 류
		농 지 연 구	임 업
	장 업	농 업	장 업
		농 업 연 구	<u>장 업 곤 총</u>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u>농 업 연 구</u>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u>수 의 연 구</u>	<u>수 의</u>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기 계	공 업	농 업 기 계
		<u>농 업 연 구</u>	농 공
	농 업 토 목	<u>시 설</u>	농 업 토 목
<u>농 업 연 구</u>		농 공	
생 활 지 도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u>해 양 수 산</u>	일 반 수 산
			수 산 제 조
			수 산 중 식
			어 로
		수 산 물 검 사	
		<u>해 양 수 산 연 구</u>	<u>전 직 류</u>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4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u>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u>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u>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u>
8 급		
9 급		

비 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lt;개정 99.12.3, 06.2.15&gt;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

(제24조제2항 관련)

구분 \ 상당계급	5급	6급·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공무원		기능 6급이상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이하
경찰공무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고 용 직 공 무 원					고용직
<u>계 약 직 공 무 원</u>	<u>가급</u>	<u>나급</u>	<u>다급</u>	<u>라급</u>	<u>마급</u>

정선군공고 제2008-352호

정선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가.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하여 특정 인을 승진 임용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정선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으로 개정

나.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

다.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관련조문 신설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안

정선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를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군수 또는 소장, 읍·면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8-353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기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개정의 주요내용

가. 기 등록 전방조종자동차 자동차세 : 65,000원

나. 신규등록 차량(08.1.1 이후)은 다음과 같이 적용

- 2008년 : 승용자동차세의 66% 경감
- 2009년 : 승용자동차세의 33% 경감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등은 2008년 6월 26일까지 정선군수 (참조 : 재무과장 ☎560-2282)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2008-4호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결산 공고

2007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결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1. 대 차 대 조 표

제3기(전기) 2006. 12. 31. 현재

제4기(당기) 2007. 12. 31. 현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4 기(당기)		제 3 기(전기)	
		금액		금액
<b>I. 유동자산</b>		<b>511,724,984</b>		<b>901,815,045</b>
1. 현금예금		411,724,984		901,815,045
2. 단기금융상품		100,000,000		-
<b>II. 고정자산</b>		<b>0</b>		<b>0</b>
<b>1. 수탁투자외기타자산</b>		<b>0</b>		<b>-</b>
1) 사업장 전도금	1,550,000		-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550,000)	0	-	-
<b>2. 수탁유형자산</b>		<b>0</b>		<b>0</b>
1) 입 목	61,659,500		-	
(수탁자산취득보조금)	(61,659,500)	0	-	-
2) 건 물	10,715,840		-	
(감가상각누계액)	(1,550,940)		-	
(수탁자산취득보조금)	(9,164,900)	0	-	-
3) 구 축 물	382,014,390		121,406,840	
(감가상각누계액)	(53,714,130)		(12,907,52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328,300,260)	0	(108,499,320)	0
4) 기계장치	40,626,160		40,626,160	
(감가상각누계액)	(15,819,790)		(7,697,96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4,806,370)	0	(32,928,200)	0
5) 차량운반구	177,344,400		115,810,230	
(감가상각누계액)	(76,810,330)		(59,982,6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00,534,070)	0	(55,827,630)	0
6) 공기구비품	561,562,120		509,323,820	
(감가상각누계액)	(344,847,600)		(268,408,0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16,714,520)	0	(240,915,820)	0
<b>3. 수탁무형자산</b>		<b>0</b>		<b>0</b>
1) 개발비	74,754,410		91,449,13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74,754,410)	0	(91,449,130)	0
<b>자 산 총 계</b>		<b>511,724,984</b>		<b>901,815,045</b>

## 대차대조표 계속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4 기(당기)		제 3 기(전기)	
		금액		금액
<b>I. 유동부채</b>		411,724,984		801,815,045
1. 미지급금		394,298,475		775,989,681
2. 예수금		17,426,509		25,825,364
3. 기타유동부채		-		-
<b>II. 고정부채</b>		0		0
1. 퇴직급여충당금		-		-
2. 퇴직연금예치금		-		-
<b>부채총계</b>		411,724,984		801,815,045
<b>I. 원시자본금</b>		100,000,000		100,000,000
1. 원시자본금		100,000,000		100,000,000
<b>II. 자본잉여금</b>		0		0
1. 출연금		-		-
2. 기타자본잉여금		-		-
<b>III. 이익잉여금</b>		0		0
1. 이익준비금				
2. 차기이월이익잉여금		0		0
· 당기순이익 : 0				
· 전기순이익 : 0				
<b>자본총계</b>		100,000,000		100,000,000
<b>부채와자본총계</b>		511,724,984		901,815,045

## 2. 손익계산서

제3기(전기) 2006. 01. 01. ~ 2006. 12. 31. 까지

제4기(당기) 2007. 01. 01. ~ 2007. 12. 31. 까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4 기(당기)		제 3 기(전기)	
	금액		금액	
<b>I. 영업수익</b>		<b>2,302,811,790</b>		<b>2,126,216,560</b>
1. 대행사업수익	2,835,661,000		2,804,822,000	
2. 정산반환금	(378,544,210)		(608,624,820)	
3. 자본예산대체	(154,305,000)		(69,980,620)	
<b>II. 영업비용</b>		<b>2,302,811,790</b>		<b>2,126,216,560</b>
1 급여	417,392,310		385,295,490	
2 제수당	227,026,010		244,016,690	
3 기타직보수	438,501,990		376,850,630	
4 퇴직급여	94,897,330		94,403,880	
5 복리후생비	265,222,970		270,564,780	
6 여비교통비	35,738,220		34,994,960	
7 통신비	9,793,000		9,746,740	
8 수도광열비	173,145,500		151,654,520	
9 공공요금및제세	8,555,790		4,312,600	
10 일반수용비	64,004,570		39,717,310	
11 피복비	-		21,598,100	
12 도서인쇄비	75,094,750		41,610,530	
13 지급임차료	5,341,300		2,456,300	
14 수선유지비	150,580,700		222,301,920	
15 차량유지비	20,009,160		14,142,890	

## 손익계산서 계속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4 기(당기)		제 3 기(전기)	
	금액		금액	
16 보험료	34,278,780		24,893,480	
17 지급수수료	43,172,940		38,113,670	
18 업무추진비	7,196,490		3,998,900	
19 교육훈련비	4,589,000		1,564,000	
20 재료비기타	57,973,930		41,304,950	
21 행사등잡비	64,854,220		19,850,650	
22 포상금	25,812,230		25,133,530	
23 배상금	94,000		-	
24 기관성과급	78,279,800		56,690,440	
25 기부금	1,256,800		999,600	
III. 영업이익(손실)		0		0
IV. 영업외수익		0		0
1. 수입이자	19,044,431		25,236,481	
2. 정산 반환금	(19,044,431)		(25,236,481)	
V. 영업외비용				
1. 기타영업외비용				
VI. 경상이익(손실)		0		0
VII. 특별이익				
VIII. 특별손실				
IX. 당기순이익		0		0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3기(전기) 2006. 01. 01. ~ 2006. 12. 31. 까지

제4기(당기) 2007. 01. 01. ~ 2007. 12. 31. 까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4 기(당기)		제 3 기(전기)	
	금액		금액	
<b>I. 처분전이익잉여금</b>		0		0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월결손금)	-		-	
2. 전기손익수이익	-		-	
3. 전기손익수정손실	-		-	
4. 수정후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	-		-	
5.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		-	
<b>II. 이익잉여금처분액</b>		0		0
1. 이익적립금				
2. 감채적립금				
3. 건설적립금				
4. 기타적립금				
5. 일반회계등배당금				
<b>III. 차기이월이익잉여금</b>		0		0

## 4. 현 금 흐 름 표

제3기(전기) 2006. 01. 01. ~ 2006. 12. 31. 까지

제4기(당기) 2007. 01. 01. ~ 2007. 12. 31. 까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과 목	제 4 기(당기)		제 3 기(전기)	
	금액		금액	
<b>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 390,090,061)</b>		<b>72,793,320</b>
1. 당기순이익	-		-	
2. 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		-	
가. 감가상각비	-		-	
3. 현금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		-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390,090,061)		72,793,320	
가. 미지급금의증가(감소)	(381,691,206)		54,653,335	
나. 예수금의증가(감소)	(8,398,855)		18,139,985	
<b>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573,447,600)</b>		<b>(148,390,960)</b>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00,000,000		100,000,000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00,000,000		100,000,000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673,447,600		248,390,960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00,000,000		-	
나. 수탁자산의 취득	473,447,600		248,390,960	
사업장전도금의 증가	1,550,000		-	
입목의 취득	61,659,500		-	
건물의 취득	10,715,840		-	
구축물의 취득	260,607,550		84,248,840	
기계장치의 취득	-		30,253,500	
차량운반구의 취득	76,534,170		19,368,240	
공기구비품의 취득	58,880,540		44,620,380	
개발비의 지출	3,500,000		69,900,000	
<b>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b>473,447,600</b>		<b>248,390,960</b>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89,045,000		360,030,620	
가.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의증가	489,045,000		360,030,620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5,597,400		111,639,660	
수탁자산취득보조금반납	15,597,400		111,639,660	
<b>IV. 현금의 증가(감소)</b>		<b>(490,090,061)</b>		<b>172,793,320</b>
<b>V. 기초의 현금</b>		<b>901,815,045</b>		<b>729,021,725</b>
<b>VI. 기말의 현금</b>		<b>411,724,984</b>		<b>901,815,045</b>

## 5. 재무제표 주석·주 기

### 가. 재무제표작성기준 및 주요회계처리방법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공단 회계규정, 행정자치부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예 산 결 산

예산은 행정자치부 공기업예산편성지침 및 정선군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선군수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결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 2) 수익의 인식기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정선군에서 위탁한 시설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세입의 징수대행과 그 시설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정선군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정선군 세입금은 정선군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 “군”에 납입하고 있음.

#### 3) 대행사업비의 정산

정선군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행사업비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회계연도 말에 그 집행 잔액과 교부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정선군에 반환하고 이를 정산반환금으로 표시하고 있음.

#### 4) 유형고정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무형자산

자본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이므로 유형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자본금 이외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군”의 자산이므로 수탁자산에 계상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 및 지방공기업법상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간접법으로 표시하였음.

자본금으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며, 수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증액하고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을 감액하여 수탁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고, 수탁무형자산(개발비)은 감가상각비를 수탁무형자산 및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을 직접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음.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실질적으로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음.

#### 5) 퇴직급여 총당금 및 퇴직연금 자금의 관리

기말현재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소요액 전액을 농협중앙회 정선군 지부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고 있어 퇴직급여총당금은 계상하지 않으며, 당기말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불입액은 252,609,013원임.

#### 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기 말 현재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연금은 임직원의 퇴직급여 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다.

(단위 : 원)

과목	예금종류	금액	예입처	비고
계		511,724,984		
현금과예금	계	411,724,984		
	보통예금	394,298,475	정선농협 동면지점	대행사업비
	보통예금	9,010,660	정선농협 동면지점	세입세출외현금
	보통예금	8,315,609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자동납부금
	보통예금	-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박물관 카드결제용
	보통예금	100,240	정선농협 동면지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100,000,000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자본금